영주시 공고 제2023 - 29호

「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9일

영 주 시 장 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관리계획의 ‘기준가격 및 기준면적’ 조항 신설
(안 제12조제3항)

나. 법령에서 용어를 간략하게 함에 따라 기존 “사용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정비함(안 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32조, 제33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회계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회계과장)
연락전화 : (054)639-6512
E-mail : key80@korea.kr, FAX : (054)639-6489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
2. 공유재산의 기준면적이 취득인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인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

제16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32조, 제33조 중 “사용·수익허가”를 “사용허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붙임 2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·②(생 략) <신 설>	제12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. 공유재산의 기준면적이 취득인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, 처분인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
제16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·수익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. ②(생 략)	제16조(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사용허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②(현행과 같음)
제19조(사용·수익허가의 제한) ①(생 략)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	제19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

사용·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.	사용허가----------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행정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.	제20조(사용허가) ① ---------- 사용허가---------- -----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	5. 사용허가 ----------
6. 사용·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	6. 사용허가 ---------- ------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사용허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제20조의2(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)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	제20조의2(대부 또는 사용허가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
제21조(사용·수익허가부의 비치)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	제21조(사용허가부의 비치) ---------- 사용허가----------

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	----------
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	제22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 사용허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	③ ---------- 사용허가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준용규정)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, 일시사용허가,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23조(준용규정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사용허가-- ---------- ----------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이 조에서 "대부료등"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	제32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-----사용허가-----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)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,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·수익허가,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·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·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·해지의 경우에는	제33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) ①---------- 사용허가 -----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사용허가----------

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. ④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
검토사항	
주요내용	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 · 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 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	연 락 처	
	성 명			(서명 또는 날인)